

원심창 선생의 투쟁과 기본정신

이영근 (통일일보)

내가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1958년 5월 이승만 정권하의 한국에서 일본으로 망명한 지 채 한 달도 못 되는 어느 날, 신전 네거리에 있는 어느 선술집 2층에서였다

당시 선생은 1955년경부터 통일협의회 운동이 좌우익 협격을 받아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서 수개월에 한번정도로 통보 비슷한 것을 펴내면서 통협외 간판만을 유지하고 있을 무렵이어서 선생과 나는 만날 그날부터 우선 통일운동의 선전, 계몽을 위해 신문을 발간하고 그것을 토대로 장차 통일 추진조직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그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통일조선신문'으로 그 후 13년, 지난 7월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선생 곁에서 미미하기는 하나 같이 통일운동을 계속하여 왔다.

그간 1961년부터 약 7년 동안 월간영문선전지 ON KOREA를 발행하고 1964년부터는 통일조선 연감을 발간하여 3권을 발행하였고 1965년에는 한국민족자주통일동맹 일본본부를, 다시 66년에는 한국민족자주통일청년연맹을 조직해서 그런대로 통일운동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선생이 돌아가신 그날까지 13년 동안은 4·19혁명 직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통일운동의 암흑시대였다. 권력계층 박해는 준엄한 것이었으며 시세에 밝은 주위사람들의 눈은 차가웠고 방해도 극심하였다.

신문의 창간호부터 인쇄되는 동안 자금조달로 뛰어다니지 않으면 안 될 만치 고난 속에서 출발한 운동이었고 견디기 힘든 나날 그리고 고투의 연속 이었다. 나 자신 몇 번이나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허물어져가는 나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이끌어 주신 것은 선생이었다. 몇 번인가 수도 없이 군참새 집에 앉아 잔술을 권해가면서 이보다 더 힘든 시대를 견뎌 나온 내가 있지 않은가 라고 격려하신 선생님.

그때의 선생님의 눈은 부드럽고 자애가 가득 차 있었으며 평생을 통한 선생님의 애국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자주독립투사 평화 통일의 선구자

14세로 3·1독립운동에 참여하신 후 만 65세로 영면하실 때까지 참으로 50여년을 한결 같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선생님은 문자 그대로 희세의 애국자였다.

반세기에 걸친 선생의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은 크게 보아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1923년 17세로 독일 면학하면서 아나키스트 운동을 통한 민족해방운동에 참가한 후 1933년 고. 백정기 의사와 더불어 주중 일본공사에 대한 천주의 철주를 가하든 세칭 육삼정 사건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1심에서 사형, 최종심에서 무기징역 복역 중 재일시대의(학우회) 사건으로 5년 징역형을 가형 받고 8·15 해방을 맞아 1945년 10월 출옥하실 때까지 청·장년기 20여년 중 15년 남짓한 세월을 옥중에서 고생하셨다.

다음으로 1945년 말부터 10년간, 선생은 그동안 선생이 일시귀국 하셨을 때에는 강대국들이 우리민족에게 강요하려든 신탁통치의 반대운동에 몸바쳐 투쟁하셨고 46년 다시 독일하신 후에는 민단을 창설하고 초대사무총장으로 또는 중앙단장으로 당시 심한 혼란 상태에 놓여있는 교포사회의 안정과 수습 그리고 국위선양에 진력하셨다. 이 시기 선생의 활동은 조국의 자주독립 완수에 집중되었다.

끝으로 1955년부터 71년 7월 선생이 서거하실 때까지 16년간은 선생의 말년을 장식하는 조국통일운동의 시기였다. 1955년 국내외를 통해서 처음으로 조국 평화 통일 추진체인 조국평화통일촉진협의회가 일본에서 발기되자 선생은 대표위원 겸 사무국장으로 취임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셨다.

그러나 통협은 1년도 못되어 앞서 말한바와 같이 쇠퇴하여 선생 혼자서 여러 해 동안 통일운동의 명맥만을 유지시켜 왔었다. 그 후 1959년부터는 새로운 진용으로 통일운동을 진행시켜 통일 이론의 정비와 동포대중의 계몽선전 그리고 추진조직의 확립을 위하여 항상 진두에 서서 지도

하셨습니다.

선생은 우리조국통일운동의 수호자였으며 통일운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간 선구자였다.

살신위국의 화신(殺身僞國의 化身)

퇴조기에 정치운동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아무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향의 정치투쟁을 개척해나가는 일의 고난은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선생은 항상 이와 같은 고난을 헤쳐 나가셨다. 선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신명을 받쳐 일하는 희생심 밖에 없었다. 선생이 일제시대에 아나키즘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길을 선택한 것도 그러기 위해서였다.

조직 행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제자리걸음을 함으로써 꺾기의 기회를 잃고 지도층의 결단을 기다리다 못해 동포대중으로 하여금 체념의 심연에 빠져 들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테러라는 비난을 무릅쓰면서 몸소 적에게 돌진함으로써 대중의 가슴속에 잠들어있는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셨으며 세계에 저항민족의 존재의식을 심어놓았다. 그래서 선생은 자진하여 중국각지의 일제기관에 폭탄을 던져왔으며 육삼정 의거를 기획한 것도 선생이 지닌 살신위국의 정신을 몸소 발휘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선생의 기질은 해방 후 조국이 연합국 또는 타국에 의하여 신탁통치 되는 것을 허용 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어떠한 간에 선생에게는 독립이나 그렇지 않으면 투쟁이냐의 두 가지 길밖에는 없었다. 그러기위해 선생은 46년 재차 도일하신 다음에 반탁(反托)을 외치며 신조선 건설동맹 민단을 창설하고 즉시 독립을 위해 투쟁하셨다.

그러나 선생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을 사리사욕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려는 것을 눈감고 보아 넘기는 그런 분은 아니었다. 선생은 6·25동란이 발발되자 침략자의 응징에 나섰고 휴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집권자들에게 항거하였다.

선생의 항일투쟁 운동→반탁자주독립촉진, 완수운동→조국평화통일운동은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러나 선생은 국수주의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국제적으로 저명한 아나키스트였으며 겸허한 민족 도의를 제창한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를 지닌 인물이었다. 해방직후 46년 초 당시 조선인 소설가로 알려져 있는 장혁주(張赫宙)가 담당하고 있는 조일신문의 성「聲」란에 실린 다음과 같은 투서는 선생의 사람됨의 일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전일 상경하여 신 조선건설 동맹의 원심창씨와 회담하였다.

“조선인에게는 3식4흡 배급의 특전이 있는가”라는 필자의 말에 “없다”는 元씨 “그런 요구를 제기할 생각은 없느냐” “없다”는 元씨의 담당한 표정에 필자는 뜻밖이라는 생각으로 “외국인이니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구하자 원씨는 “설혹 그런 특전이 있다 하여도 우리들은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옆에 사는 일본인이 2흡1작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들만 4흡을 받아 배불릴 수가 있겠습니까”라며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대답하셨다. 필자는 얼굴을 붉혔다 (원문대로)

절필은 무욕(絶筆은 無慾)

이와 같은 지순무구한 지도자가 지금은 가셨다. 벌써 그 온화한 얼굴도 대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취하면 입에서 나오던 ‘로레라이’의 노래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65세라고 하지만 지금도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 선생은 앞으로 로도 20년은 더 사실 수 있는 좋은 몸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선생의 일은 지금부터라고나 할까 그런 선생이 조국통일이 성취되어 귀국하는 날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국의 시골 시구도(矢口渡)에서 돌아가셨다. 항상 신변에서 일하며 모시고 있는 내가 좀 더 일찍 병을 발견하고 치료하여 드렸더라면 이와 같은 결과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그 회환을 풀길이 없다.

선생은 나에 대한 유서에서 민족의 다행을 못보고 가는 것이 대죄라고 말씀 하시고 절필에서는 무욕(無慾)이라고 쓰셨다. 운동의 스승이며 마음

의 형인 선생과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어 마음의 아픔을 가눌
길이 없다

“촉촉이 비 내리는 矢口 나루터에서
처절한 한을 품은 그의 영혼은 가셨네
서쪽 하늘밑 고국을 못 잊어하며
7월의 강바람도 그의 비원을 품었구나”

- 이영근(李榮根, 1919~1990) : 진보당사건으로 1959년 일본 망명. 원심창선
생과 ‘통일일보’ 공동창업자.

“원심창 의사님과 통일일보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한겨레 한뜻으로 한 길로
가의 한마음으로 통일일보를 설립하셨던 것입니다” - 원심창의사의 사회장 장
례 영결식장의 표어

- 이영근 사장은 1990년 5월 14일 타계했고 한국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
장 1등 서훈을 받았다. 이영근 사장도 장례식장에서 똑같은 문구로 영결식을
거행했다.

【 판 결 문 】

『 상해 육삼정 재판 』

판결

본적 : 조선 경기도 진위군 서면 안정리 175

주소 :상해시 공조계 채시로 저영리 16호

무직 :원심창

명치 :1939년 12월1일생

원심창에 대한 살인예비 치안유지법 및 폭발물 취재 규칙 위반
건물손괴 백정기 와 이강훈에 대한 살인예비 치안유지법 및 폭발물 취재
규칙 위반 각 피고사건에 대하여 당 재판소는 검사 촌상상태랑(村上常太
郎) 관여로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 한다.

주문 (主文)

피고인 원심창 백정기 양인을 각 무기징역형에 피고인 이강훈을 징역15
년 에 처한다.

압수물건 중 증 제3호의 대형권총1정, 증 제4호의 소형권총 1정, 증 제5
호의 대형권총실탄 9발 증 제6호의 소형권총 실탄 7발은 이를 모두 몰
수한다.

소송비용중 감정인 마장전활(馬場傳活)에 지급한 것은 피고인 3인의 연
대 부담으로 한다.

이유 (理由)

피고인 元心昌은 조선 경기도에 있는 평택공립보통학교 졸업당시 대정

8년(1919) 3월 1일 때마침 발발한 조선 독립운동에 즈음하여 현상에 불만을 품고 장래는 독립운동을 할 것을 결의하고 1924년 8월경 동경시가로 가서 1925년 4월 일본대학 사회과 전문부에 입학하였으나 학비가 뜻대로 조달되지 않아 동년 9월경 퇴학하였는데 그때부터 아나키스트 주의에 쏠려 「크로포트킨」 저 상호부조론 **대립형** 전집 기타 아나키즘 문헌을 탐독하여 이를 믿게 되었으며 그 후 북경 상해 등지에서 아나키즘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 자이다.

제1 피고인원심장은

남화조선인연맹(南華朝鮮人聯盟)이 혁명적 수단으로 현재의 사회조직을 철폐하고 상호부조의 절대적 자유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 통치권을 탈취하여 조선독립을 성취하고 일본의 입헌 군주체제를 철폐하고 일체의 사유재산을 일반사회의 공유로 넘기고 일본 및 조선에서 아나키즘 주의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이의 달성을 위하여 청년 대중에게 선언 및 실행을 기도하는 비밀 결사인 것을 알면서도 1931년 6월경 이에 가맹하였고

(2)

1930년 10월부터 서기로 일하면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연맹원에 대한 보고 및 연구회의 개최를 담당하고 연맹의 주의 정책을 실현 또는 확대 강화할 것을 기도하였으며

가, 1931년 8월 28일 29일의 일한합병(日韓合併) 기념일을 맞아 동월 20일경 불조계 채시로(仙租界菜市路)와 변비덕로(辨斐德路)의 교차점 중국인 철공장 2층에 있는 당시 피고인 원심장의 주거지에서 동 연맹명의로 「8월 29일은 조선민족이 타족(他族)의 노예가 된 날이다. 분발하여 적의 아성을 쳐부수자」 라고 제목을 달고 그 주의 목적을 선전한 격문(증제8호)을 약100매 등사, 동월 27, 28일 상해(上海)에 있는 여러 조선인에게 우송 하였으며

나, 1932년 5월 1일 노동절에 즈음하여 동년 4월 말경 불조계 채시로 저영인리 16호의 당시 원심장의 주거지에서 동 연맹 명의로 된 노동절의 의의 및 아

나키스트주의의 내용을 게재한 선전문 약100매를 등사하여 먼젓번과 같이
재 상해 조선인에게 우송하였고

다, 1933년 3월 1일 조선독립기념일을 맞아 동년 2월 하순경 전기 원심창의
주거에서 동연맹의 명의로 「일본제국주의를 저주하며 모든 사유 재산제도와
권력을 파괴하고 아나키즘 사회를 건설하려는 취지」를 쓴 선전문(증 제9호와
같은 것) 약 70매를 등사하여 앞서와 같이 상해 조선인에게 우송하였고

(3)

1932년 11월 중순경 전부터 잘 아는 아나키스트주의자 유가(柳架)가 북경으
로부터 상해에 온 것을 알고 전리방(田理芳)과 더불어 그 숙소인 불조계 서문
로 무릉공우(武陵公寓)에서 유가와 만났을 때 그로부터 「나는 북경에서 항일운
동에 종사하며 그 자금으로 복건(福建)의 항일단체로부터 7,000원을 받았는데
그 잔금 3,000원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북경 또는 천진에 있는 일본군부 또
는 일본 영사관에 폭탄을 던지면 다시 광동 복건 방면의 항일회로부터 수만의
자금을 얻어낼 수 있으니 그 자금을 아나키즘 운동에 쓰라. 나는 그와 같은 동
지를 모집하러 왔다」고 하여 찬성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 원심창 등은 이에
찬성하고 피고인 원심창, 유가 및 전리방 3명은 일본군부 또는 일본 영사관을
손괴함과 동시에 아나키즘의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곳에 폭탄을 던질 것
을 공모하고 유가가 수류탄 3개를 준비한 다음 동년 11월 14일 3명이 천진으
로 가서 16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하여 전리방은 관저에 유가는 사령부에 각기
수류탄을 던지고 피고인 원심창은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행에는 참가 하
지 않기로 협의한 다음 대신 상하이로 돌아가 동지들에게 보고하는 책임을 맡
았다. 이에 따라 영조계(英租界) 빅토리아 공원 안으로부터 총영사 등이 살고
있는 일본 총영사 관저에 수류탄 1개를 던져 이를 폭발시켜 관저 외곽의 벽돌
담 일부를 손괴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

(4)

1933년 3월 5일 상해 불조계 복이리로 정원방 6호인 피고인 백정기, 이강훈
주거에서 동 피고인 양인과 이달, 전리방, 양여주, 이수현, 김지강, 엄형순 등
의 흑색 공포단원 및 정화암, 정해리 등 아나키스트들에 대하여 최근 정보라
하며 「현재 우리 아나키스트인 이 동양에서 가장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제국주
의는 일본제국주의 인바 일본은 전력을 다하여 만주국의 건설한 발달을 원조
하고 있기 때문에 수년을 넘기지 않고 건설한 국가가 될 것은 필연적인 사실
이며 또한 일본도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가 될 것이므로 조선과 중국의 혁명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다. 주화일본공사 유길명은 일본정부 망목 육군대신의 밀명에 따라 중국국민 정부군사 위원회장 장개석(蔣介石)을 4,000만원으로 매수하고 蔣으로 하여금 만주를 포기시키고, 열하(熱河)에서 무저항주의를 취하도록 할 목적으로 중국에 왔으며 이와 같은 교섭은 2월 중순경 대체로 성취되어 근일 중 귀국할 예정인바 흥구의 모 요정에서 송별연회가 열릴 예정인 것을 알았다」는 뜻을 전하자 참석자들은 협의한 끝에 유길공사가 지참한 4,000만원은 일본 민중의 고혈을 착취한 것으로 장의 행동은 중국 민중을 파는 매국적 행위인 만큼 우리 아나키스트로써 이 밀약을 양국 민중에게 폭로하여 밀약의 성립을 저지함과 동시에 일본의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여 중국 민중의 반장열(反蔣熱)을 유발시킴으로써 항상 주장하는 혁명시기의 단축을 꾀하고자 그 수단으로 유길공사를 암살할 것을 모의하고 그 다음날 추첨한 결과 피고인 백정기 및 이강훈은 피고인 백정기가 동지 정화암, 전리방으로 부터 미리 손에 넣어두었던 폭탄 및 화균실(華均實)로부터 입수한 권총을 사용하여 유길공사를 암살하기로 하고 정화암은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원심창은 동지 곡전부용사(谷田部勇司)에게 전시 암살계획을 알려서 동의를 얻은 다음 동 계획에 참여시키고 동월 9일 유길공사의 사진을 입수하였고 또 그의 상용 자동차번호도 알아내어 유길공사의 암살계획 만을 엿보던 중 오는 17일 공동조계문로(共同租界文路) 「육삼정」에서 유길공사의 연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탐지하고 피고인등은 그날 밤 유길공사가 연회장으로부터 나와 차를 타려고 하는 것을 엿보아 폭탄을 던져서 동 공사를 암살할 것을 결의하고 동월 13일 밤, 「육삼정」과 그 부근을 시찰한 다음, 당일의 잠복장소를 무창로의 중국요리점 송강춘으로 정하고 동월 16일 결행하는 날 밤의 연락은 육삼정 앞 공소자동차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지 모로부터 유길공사의 돌아가는 시간을 문로와 무창로 사이 길에 있는 곡전부에게 전하고 곡전부는 송강춘에 있는 피고인등에 속보하여 피고인 백정기와 이강훈은 곧 출동하여 공사에게 폭탄을 던질 것이며 피고인 원심창은 우포로의 교차점에서 자동차로 대기하고 폭음이 들린 후 3분 동안 다녔다가 다른 피고인들이 오지 않을 때에는 바로 도주할 것을 협의 결정하고 17일에는 오후 2시경 피고인 백정기 및 이강훈은 상해공우에서 그날 밤에는 우선 피고인 백정기가 도시락형 폭탄(증 제1호)을 공사에게 던지고 그를 추적한 자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 이강훈은 수류탄(증제2호)을 던지고 또 소형권총(증제4호)을 사용하여 피고인 백정기는 대형권총(증3호)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체포를 면할 것을 협의하였다.

동일 오후 8시경에 이르러 유길공사는 9시 20분경 육삼정을 나올 것이라는 통보에 따라 피고인등 3인과 곡전부용사는 자동차로 현장에 갔는데 차속에서 피

고인 백정기는 원심창으로부터 전시 권총을 받고 전시 송강춘에 도착하자 다 같이 하차 곡전부는 연락을 하러 갔고 피고인등 3인은 송강춘에서 기다림으로써 폭탄을 사용하여 유길공사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암살에 착수하기 전에 체포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원심창의 제1의 (2)(3) 폭발물을 사용하려고 한 행위는 범의계속에 관계되는 일임. 또, 피고인 원심창은 1928년 9월 2일 동경재판소에 있어서도 1926년 법률 제60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의하여 징역 3월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임.

증거로 미루어볼 때 판시 사실에 대해서는 범의의 계속의 점만을 제외하고 피고인 3인이 전부 이를 자인할 뿐만 아니라

1,

앞수된 증제7호의 남화조선인연맹규약 및 규정이라고 한 문서와 증제8호의 「8월 29일은 조선민족이 이(異)민족의 노예가 된 날이니 일어나서 적의아성을 쳐부수자」라고 제한 문서와 증제1호 제2호의 폭탄파편 및 증제3 내지 증제6호의 대소권총실탄의 존재는 이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피고인 원심창의 판시 제1의 (3)(4)는 폭발물의 사용 또는 사용하려고 한 행위 범의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함. 또 피고인 원심창의 판시전과는 피고인이 당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음. 따라서 판시 사실은 증명된 것으로 한다.

법률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원심창의 판시행위 중 (1) 및(2) 국제변혁을 목적으로 한 결사에 가입한 점과 목적수행을 위한 점은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후단에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한 결사에 가입한 점 및 목적수행을 위한 점은 동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바 이는 1개의 행위로써 2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다 무거운 형에 처하도록 하고 제1의(3) 폭발물을 사용한 점은 폭발물 취제규칙 제1조 형법 제60조에 (4)의 행위 중 사람의 신체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폭발물을 사용하려다가 들킨 점은 폭발물 취제규칙 제2조 형법 제60조에 살인 예비의 점은 형법 제201조 제6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행위로 여러 개의 죄명에 저촉되느니 만큼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 및 제10조에 의하여 무거운 형인 폭발물 취제벌칙 제2조의 형에 따르고 2개의 폭발물 취제벌칙을 위반한 행위는 연속범인 만큼 형법 제 55조 제10조에 의하여 보다 무거운형 인 폭발물 취제벌칙 제1조의 죄는 하나로 하여 소정 형기중 무기징역을 선택하였고 아울러 전

시 치안유지법 제1조 1항 후단의 죄는 형법 제45조 전단의 병합 죄이나 이미 앞에서 무기징역이 선택 되었으므로 동법 제46조 제2항에 의항에 따라 다른 형은 가하지 않고……

백정기는 판시 행위중 제2(1) 국제변혁을 목적으로 한 결과를 조직한 점은 치안유지법 제1조 1항에 해당하는 바 이는 하나의 행위로 전자의 형에 따를 것이며 전기 결사조직의 행위 중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는 연속범인 것으로서 형법 제55조 제10항에 의하여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전단의 죄와 한 죄로 하여 동조 소형 형기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함……

제2의 (4)(3)의 행위 중 사람의 신체를 해할 목적으로 폭발을 사용하려고 할 때 발각된 점은 폭발물 취제벌칙 제2조 형법 제60조에 살인 예비의 점은 형법 제201조에 각기 해당하므로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저촉되므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과 제10조에 의하여 보다 중형인 폭발물 취제벌칙 위반의 형에 따른다. 또 전시 결사 조직의 죄는 형법 제54조 전단의 합병 죄이나 이미 결사 조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택되었으므로 동법 제46조 2항에 의하여 여타의 형은 가하지 않는다……

피고인 이강훈(1) 국제변혁을 목적으로 한 결사에 가입한 점은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후단에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한 결사에 가입한 점은 동법 제1조 2항에 해당하는바 이는 1개의 행위로서 여러 개의 죄명에 저촉되므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과 제10조에 의하여 보다 무거운 전자의 형에 따르기로 하며 제3(2)의 행위 중 사람의 신체를 해할 목적으로 폭발물을 사용하려 할 때 발각된 점은 폭발물 취제벌칙 제2조 및 형법 제60조에 살인예비의 점은 제201조에 해당하므로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저촉되므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 및 제10조에 의하여 폭발물 취제벌칙 제2조의 형에 따르고 동조 소형형기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전시결사 가입의 행위는 형법 제54조 전단의 합병 죄이므로 동법 제47조 제10조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전자의 형에 처하고 동법 제14조의 제한범위 내에서 병합 죄를 가중시켜 이강훈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또 형법 제21조에 의하여 대형권총 1정(증제3호) 소형권총 1정(증제4호) 대형권총 실탄 9발(증제5호) 및 소형권총 실탄 7발(증제6호)은 피고인들이 본 건 살인예비에 쓰려던 것으로서 범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19조 제1항 2호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압수함.

소송비용 중 주문 특기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항 제237조 제1항 제238조에 따라 피고인 3인이 연대해서 부담시키도록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함

소화(昭和) 8년(1933년) 11월 24일

장기 지방 재판소 형사부 (長崎地方裁判所刑事部)

재판장 판사(判事)